

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
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 청 북 도 의 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
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양섭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3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(안 제4조)

나.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사업 등(안 제5조)

다. 수행기관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·감독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라.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협의회 설치·구성·운영 등
(안 제8조 ~ 안 제10조)

마. 산·학·연·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포상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제안배경 및 필요성 등

- 지난 2023년 12월, 진천·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(이하 “특구”라 함)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 고시됨¹⁾
- 특구는 충청북도 내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, 지역 특화 발전,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 구축, 산·학·연 투자 촉진 등 정책적·경제적 기대효과가 있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·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²⁾에 해당하는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, 제정을 위해 관계 부서(산업육성과) 협의와 조례안 예고(2024. 3. 6. ~ 12., 접수의견 없음)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 준수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1)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108호, 『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·지정해제 고시』 (2023. 12. 7.)

2)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,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- 이 제정안은 본칙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총칙규정으로 조례의 목적, 정의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함)의 책무를 규정하였음
- 안 제4조는 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
- 안 제5조는 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(이하 “수행기관등” 이라 함)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
-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수행기관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도지사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이 보편·타당함
 -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라 수행기관등에 대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 -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수행기관등에 대해 업무에 필요한 보고와 서류 제출,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지도·감독의 근거를 마련함
-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특구의 육성·지원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함)의 설치·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절함
 -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특구 관련 종합 및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자문 등 협의회의 기능에 관해 규정함
 - 안 제9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을 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특구 관련 교수 및 기업인 등 특구 전문가를 위촉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

- 안 제10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
- 안 제11조는 지역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, 특구 관련 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,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등 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·학·연·관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
- 안 제12조는 특구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담당 부서인 과학인재국은 제정안에 대해 ‘탄소중립 시험인증 산업특구를 실질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계획수립 및 협의회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며, 상위법 위반, 부패영향평가 등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다’는 의견을 제시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를 실질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며,
- (타당성)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내용과 협의회 설치·운영 등 조례의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
- (법적합성) 또한,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